

발간 등록 번호

11-B260003-000499-14

KOICA

지구촌 행복시대, KOICA와 함께합니다.

제19호 | 2014.12월

개발과 이슈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1 : SDGs 초안 분석¹⁾

1. Post-2015 개발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Where are we now?

- 1) UN 사무총장 주도의 Post-MDGs Framework
- 2) Rio+20 이후 SDGs의 수립 과정과 주체

2. SDGs의 내용

- 1) 전문
- 2) 17대 목표와 세부목표
- 3) SDGs의 특징과 한계

3. 초안 이후 일정과 전망

참고문헌

Appendix. 지속가능발전목표

지난 2014년 8월 12일 UN 총회 산하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개작업반 (The Open Working Group of the General Assembly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OWG)은 UN 총회 의장에 작업반 공동 의장명의로 17대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도출된 SDGs 초안은 다소 실망스럽다는 평가도 있지만,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를 혼합하는 등 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번 발표된 SDGs 초안은 Post-2015 개발의제 논의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2개의 큰 흐름 중 하나로, 나머지 한 축인 Post-MDGs 내용과의 통합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 동 초안과 2014년 12월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UN 사무총장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Post-2015 개발의제는 2015년 9월 UN 총회 정상회담 특별세션에서 최종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난 2012년 이후 진행되었던 Post-2015 개발의제의 논의 과정 중 한 축인 SDGs 수립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 협상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을 예측한다. 또한 세부목표들의 특징과 그 안에 내재된 패러다임의 전환을 소개하고 향후 개발 의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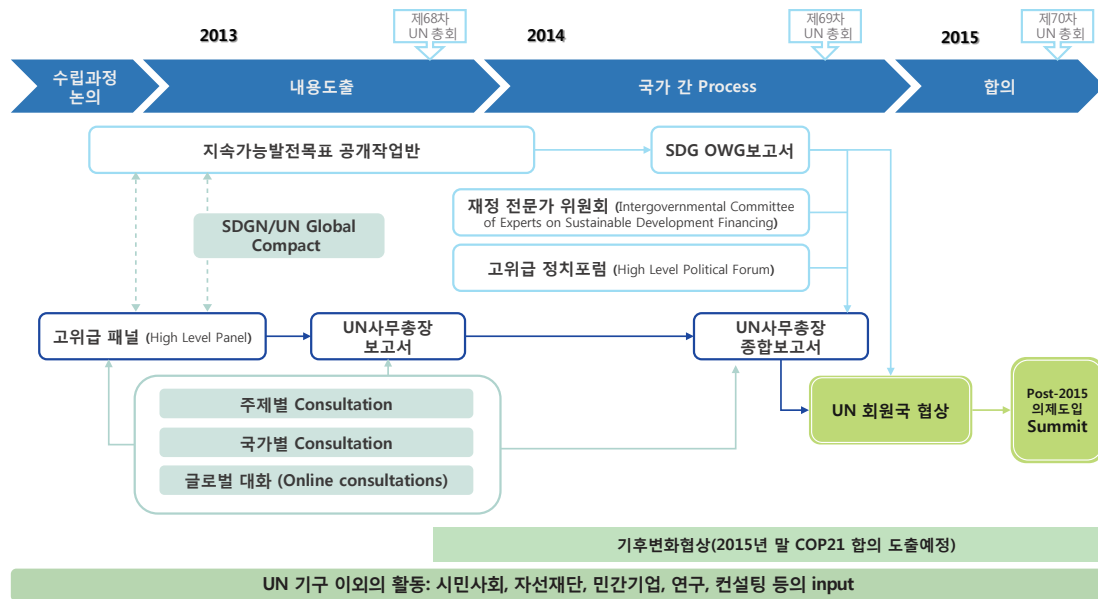
ODA연구팀 김지현

1. Post-2015 개발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Where are we now?

Post-2015 개발목표와 의제수립 과정은 크게 두 갈래로 구분지어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이후의 개발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UN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Post-MDGs 설정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Rio 정상회의 2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국제적 모멘텀 창출을 시도했던 Rio+20의 보고서와 결의안에서 시작된 SDGs 수립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참조).

1) 본 이슈는 Post-2015 개발의제 동향 관련 개발과 이슈 시리즈 중 하나로 기획되었으며, 이후 MDGs 수립에서 Post-2015 프레임워크 수립에 관한 보고서의 일부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림 1] 2015 Post-2015 개발의제 수립일정



출처 : UN Foundation (2014)

1) UN 사무총장 주도의 Post-MDGs Framework

2012년 1월 UN Post-2015 개발의제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UN 경제사회국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이하 UN DESA) 하에 UN Post-2015 개발의제 특별작업반 (UN System Task Team on Post-2015 Development Agenda, 이하 UN TT)이 구성되었다. UN TT는 2012년 7월 『우리가 원하는 모두를 위한 미래의 실현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을 발표하면서 포괄적 경제성장-사회개발-평화와 안보-지속가능한 환경을 골자로 하는 Post-2015 UN 개발의제 수립을 위한 통합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UN TT 2012). 이어 2012년 6월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나이지리아의 Amina J. Mohammed를 'Post-2015 개발계획을 위한 특별자문 (Special Advisor on Post-2015 Development Planning)'으로 임명하고, 2012년 8월 1일 총 27명으로 구성된 'UN 고위급 패널 (UN High 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이후 HLP)'을 구성하였다. 2013년 7월 HLP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빈곤퇴치와 경제전환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면서 Post-2015 논의에서 다뤄져야 할 목표와 세부과제의 예를 제시하였다 (UN 2013a).

[표 1] Post-MDGs 논의 동향

MDGs (8대 목표)	2013 HLP (12대 목표)	2013 사무총장보고서 (15대 목표)
1. 빈곤퇴치 2. 보편적 초등교육 3. 성평등 4. 영아사망률 경감 5. 모성건강 증진 6. HIV/AIDS,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 7. 환경 지속성 보장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1. 빈곤 종식 2. 양질의 교육과 평생교육 제공 3. 여아와 여성 역량강화와 성평등 달성 4. 건강한 삶 보장 5. 식량 안보와 영양 보장 6. 물과 위생 7. 지속가능한 에너지 8. 일자리 창출 및 공평한 성장 9.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10. 건전한 거버넌스와 효과적인 제도 확립 11.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 12. 장기자원조달과 글로벌 환경 조성	1. 모든 종류의 빈곤 퇴치 2. 소외와 불평등 해결 3.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 4. 양질의 교육과 평생교육 제공 5. 보건증진 6. 기후변화 7. 환경 8.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9. 기아와 영양실조 종식 10. 인구이동문제 11. 이주민의 긍정적 기여 강화 12. 도시화 13. 법치와 건전한 제도에 기반을 둔 평화와 효과적 거버넌스 구축 14. 글로벌파트너십 개선 15. 국제개발협력 체계 강화

출처: 저자 작성

이와 함께 반기문 사무총장은 2013년 MDGs 이행보고서 안에 Post-2015 방향성을 추가하고 UN TT와 HLP 보고서의 내용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품위있는 삶 (A Life of Dignity for All: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Advancing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Agenda beyond 2015)』를 발표했다 (UN 2013b). 이 보고서를 통해 UN 사무총장은 향후 Post-2015 개발의제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MDGs 이후 그 정신과 목표를 계승하면서도 보완적인 프레임워크의 비전을 보여주려 노력하였다 (표 1참조).²⁾

2)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발행된 KOICA '개발협력정책과 이슈' (2013, 10호)와 '개발과 이슈' (2013, 12호) 참조.

UN 사무총장 주도로 이루어진 Post-MDGs 논의의 특징은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도입이다.

MDGs가 UN 내부에서 소수의 전문가와 국가 간 합의로 수립되었다는 비판에 따라, Post-MDGs 논의는 주제별, 국별, 지역별 자문보고서 (consultation report)와 회의들을 통해 특히 시민사회와 민간기업의 의견을 받아들여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2) Rio+20 이후 SDGs의 수립 과정과 주제

Post-MDGs 논의가 UN을 중심으로 자문을 통해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의견을 반영한다면 SDGs는 국가 간 합의와 Major Group (이하 MG)로 지칭되는 시민사회 전문가집단의 참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2년 리우회의 이후 20년이 지난 201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 지속가능발전총회 (Rio+20)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도입에 합의하고, SDGs 개발과정이 Post-2015 개발 의제 논의와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Rio+20은 일자리, 에너지, 도시, 식량, 물, 해양, 재해 등 7대 주요 이슈 영역을 상정하고 Outcome Document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e Want)』를 발표하였다. 정치적 선언문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기존의 스톡홀름선언, 리우선언의 7대 원칙과 Agenda 21, 그리고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총 26개 원칙을 통해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세계의 의지를 밝히며, 지속가능발전이 경제위기, 사회적 불안정, 기후변화, 빈곤 퇴치 등 범지구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임을 인식하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 MDGs가 유용한 기제로 작용했으며, 이를 최대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이 개발의 새로운 지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동 보고서는 SDGs가 기존 리우선언의 원칙들을 준수하고 각국별 환경, 역량,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국제법에 따라 설정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범국가적 논의체제를 구축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67차 UN 총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공개 작업반을 구성하여 세부사항을 포함한 작업방안을 결정하고, 68차 UN 총회에 SDGs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합의했다 (Rio+20 2012).

3) 지역별 안배를 포함하여 2-3개국을 묶어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성. 자세한 내용은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SDKP) website <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owg.html> 참조.

동 합의에 의해 2012년 30대표 (50개국)³⁾로 구성된 UN SDG OWG는 공동의 장으로 Macharia Kamau 케냐대사와 Csaba Körösi 헝가리 대사를 선출했다. OWG는 1년 3개월 간 총 13회의 회의를 통해 Rio+20 Outcome Document로부터 나온 26대 원칙과 19대 중점이슈를 점검하고 SDGs 제안서를 UN 총회에

제출하였다 (UN GA 2014a).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 및 행정적인 절차를 논의했던 1차 회의 이후 2차-8차까지 19대 중점이슈를 점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5개의 세부그룹으로 나누어 병렬세션으로 목표와 세부목표 도출작업을 실시하였다.⁴⁾ MG의 활동 역시 각 주제별로 공동의장이 지정된 시민사회와 자문을 통해 문안을 만들어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등록된 MG만도 3,000여 시민사회와 학계, 민간 기관들을 포함하고 있고, OWG 회의를 통해 다양한 국가들과 연대하여 핵심문안들을 쟁점화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SDKP website).

[표 2] 공개작업반 회의 일정 및 주제

	기 간	주 제
1차	2013.3.14-3.15	의장단 선출, 의제 채택, 향후 일정 및 계획
2차	2013.4.17-4.19	SDGs 개념화, 빈곤퇴치
3차	2013.5.22-5.24	물과 위생, 식량안보·영양, 지속가능농업, 사막화·토지황폐화 방지
4차	2013.6.17-6.19	고용, 사회보호, 청소년, 교육 및 문화, 보건, 인구문제
5차	2013.11.25-11.27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경제성장, 거시경제정책문제 (국제무역, 국제금융시스템, 외채 지속가능성 포함), 인프라개발, 산업화, 에너지
6차	2013.12.9-12.13	이행수단(과학기술, 지식공유와 역량배양),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특수상향국가수요, 아프리카, LDCs, LLDCs, SIDs, 중소득국 문제, 인권, 개발권, 글로벌 거버넌스
7차	2014.1.6-1.10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거주, 지속가능한 교통,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화학물과 폐기물 포함), 기후변화와 재난위험감소
8차	2014.2.3-2.7	대양과 바다, 산림, 생물다양성, 형평성제고(사회적 형평성, 양성평등과 여성역량증진 포함), 분쟁방지, 분쟁 후 평화구축, 지속가능한 평화 증진, 법치와 거버넌스 제고
9차	2014.3.3-3.5	합의도출을 위한 19대 중점이슈 병렬세션으로 점검 및 합의 → 13차 회의를 통해 SDGs 제안서 (17대 목표, 169 세부목표)확정
10차	2014.3.31-4.4	
11차	2014.5.5-5.9	
12차	2014.6.16-6.20	
13차	2014.7.14-7.18	

4) 이 과정에서 여러 국가에서 제기된 '병렬논의 제한' 주장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다루기로 한다.

출처: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이하 SDKP) Website

또한 Rio+20에서는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체할 고위급 정치포럼 (High Level Political Forum, 이후 HLPF)을 신설하는데 합의하였다 (SDKP, 2014). 각국 수장으로 구성된 HLPF는 a)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정치적 리더십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b)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c) 경제·사회·환경 측면의 지속가능발전을 통합을 가속화하며 d) 새롭게 발생하는 지속가능발전 과제들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목적으로 2013년 첫 회의를 가진 이후 매년 1회 UN ECOSOC 주관으로 장관급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4년마다 UN총회 주관으로 정상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HLPF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Post-2015 개발의제 논의를 주도하고, 향후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고위급 포럼인 동시에 시민사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국가와 지역, 글로벌 의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다루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HLPF의 역할에 관해서는 2013년 UN 사무총장 보고서에서도 “보편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의제의 조율과 일관성 강화 및 이행 모니터링”의 중심이 될 것으로 밝히고 있기도 하다 (UN 2013b).

OWG, HLPF의 활동과 함께 주목해야할 것으로 ‘OWG를 위한 UN 내부 기술지원팀 (UN Inter-agency Technical Support Team, 이하 TST)’이 있다. TST는 UN DESA와 UNDP를 공동의장으로 하며 40여개의 UN 기구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TST는 OWG 활동에 필요한 분석보고서, 배경자료, 전문가 활용 등의 기술지원을 제공해왔으며, OWG에 UN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 플랫폼을 제공하며, 총 29개 분야에 걸쳐 이슈 브리핑을 제공하였다. 주목할 점은 TST가 Post-MDGs 의제개발 관련 기술지원체인 UN TT 아래 (under the umbrella)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술적 지원 즉, 필요한 데이터의 활용 및 이슈 분석 기구를 동일한 연장선상에 두므로써 Rio+20에서 밝힌 ‘Post-2015 개발의제와 SDGs의 통합 노력’이 실질적으로 UN 기구를 통해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Rio, Rio+20, SDGN, SDGs 논의 동향

우리 공동의 미래 (Rio: 7대목표)	우리가 원하는 미래 (Rio+20: 26대 우선순위)	SDGN (2013: 10대 목표)	SDGs (2014: 17대 목표)
1. 빈곤의 해결을 표로 하는 성장 2. 성장의 질적 변화 3. 직업/식료품/에너지/물/위생설비에 대한 인간 기본욕구의 충족 4. 지속가능한 인구 수준 및 사회발전계획에 따른 인구정책 5. 자원기반의 보존과 사용효율 증대 6. 기술혁신능력의 배양과 위험관리 방향 재설정 7.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과 경제에 대한 종합적 고려	1. 빈곤퇴치 2. 식량안보, 영양, 지속가능한 농업 3. 물과 위생 4. 에너지 5. 지속가능한 관광 6. 지속가능한 교통 7.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8. 보건/건강 및 인구 9. 생산적인 고용확대,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보호촉진 10. 해양 11. 도서국(SIDs) 개발 (모리셔스 전략) 12. 최빈국 개발 (이스탄불 행동 프로그램) 13. 내륙개도국개발 (알마티 행동 프로그램) 14. 아프리카 개발 (NEPAD) 15. 지역적 노력 16. 재난위험감소 17. 기후변화 18. 산림 19. 생물다양성 20. 사막화, 토지황폐화, 가뭄 21. 산, 산악지역 개발 22. 화학물질 및 폐기물 23.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24. 광업 (10-YFP) 25. 교육 26.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 강화	1. 기아 등 절대빈곤의 퇴치 2. 지구적 한계 내에서의 국가들 발전 실현 3. 모든 아동과 청년들의 생애주기와 생계를 위한 효과적 교육 4. 성평등, 사회적 통합 및 인권의 실현 5. 생애주기 건강과 웰빙의 실현 6. 영농시스템과 농촌생산성의 향상 7. 통합적이고, 생산적이며 및 회복력있는 도시로의 도시 발전 역량배양 8. 인간유발 기후변화의 억제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 9. 생태계 서비스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와 물 및 기타 자연자원의 관리 10. 지속가능발전 지향 거버넌스로의 전환	1. 빈곤 퇴치 2.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3. 보건 증진 4.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5. 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6. 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7. 에너지 보급 8.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 9.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10. 불평등 해소 11. 지속가능도시 구축 12. 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15. 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 16. 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출처: 저자 작성

Post-2015 개발의제 논의 중 주목할 것은 Jeffrey Sachs가 주도하는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이하 SDSN)⁵⁾의 활동과 MG의 활동이다. 2012.8 민간독립자문기구로 창설된 SDSN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해법 (solution)을 모색하기 위해, 과학기술 및 민간기업, 국가전략 전문가들의 주제별 자문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2013년 UN 사무총장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강령 (An Action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통해 10대 목표와 30대 세부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SDSN 2013). SDSN의 10대 목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개발과 발전’을 구분했던 Rio+20의 26대 우선순위에 비해 ‘인류 전체의 과제로서 지속가능발전’의 보편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Post-2015 개발의제 논의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ACP 2013).

2. SDGs의 내용

1) 전문

SDGs 제안서는 전문을 통해 SDGs의 지향점과 원칙을 기술하고 있다. 우선 SDGs는 빈곤퇴치가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전 지구적 과제이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로 SDGs는 인간중심의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며, 현재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평등·인권·평화와 안보·의식주에 대한 권리·법치주의·건전한 거버넌스·성평등·여성의 역량강화·민주주의 등을 아우르는 포용적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호를 위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MDGs가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통한 전 인류적인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SDGs는 보편성 (universality)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국가가 자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개별 국가가 처한 상황과 문화가 다른 만큼 국가정책 및 개발전략, 국내자원의 활용방안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 또는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국가에 대해 국제사회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통해 전 지구적 문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 최빈국, 내륙국, 도서국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이하 SIDS)에의 관심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뒤에 나오는 17대 목표

5) 홈페이지: <http://www.unsdsn.org>.
한국 SDSN은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사무국을 맡고 있다 (<http://www.sdsn.or.kr>)

와 세부목표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 뿐 만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기업 및 UN 산하기구들이 노력해야 함을 상기하며, 이행과정의 점검에 있어서는 UN 총회와 UN ECOSOC와 이들이 주관하는 HLPF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SDGs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와 통계를 보완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함을 언급함으로써 2013 UN 사무총장 보고서와 최근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데이터 혁명 논의와 연결고리를 제시하고 있다.

2) 17대 목표와 세부목표⁶⁾

SDGs의 17대 목표를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우선 전 지구적인 문제로서 빈곤과 기아의 종식을 일차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MDGs가 절대빈곤과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수 50% 감소를 세부목표로 삼았다면, SDGs의 **목표 1**과 **목표 2**는 절대 빈곤의 완전 종식과 국별 빈곤인구의 50% 감축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식량공급들을 규정하면서, 단순히 지표상의 목표가 아닌 생산 및 생계능력 배양과 이를 위한 정책적 도구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빈곤과 기아를 동일 선상에서 보았던 MDGs와는 달리 기아의 문제를 식량안보와 연계하여 다룸으로서 농업 생산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3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사회발전과 환경지속성, 경제성장을 강조함으로써 SDGs는 MDGs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려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발전은 SDGs에서도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보건-교육-여성의 요소가 MDGs의 형태와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8대 개발목표 중 3개를 차지하고 있었던 보건 및 건강에 관한 목표가 하나로 통합되었고, **목표 3**의 세부목표로 교통사고 사상자나 마약류 남용, 금연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서 MDGs가 목표하고 있었던 기초선의 확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자세한 내용은 뒤 Appendix 참조.

[표 4] SDGs의 주제별 분류

주 제		SDGs 목표
빈곤 (2목표, 15세부목표)		1. 빈곤퇴치 (7)* 2.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8)
사회발전 (5목표, 53세부목표)	보건	3. 보건증진 (12)
	교육	4.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10)
	여성	5.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9)
	사회/안보	10. 불평등 해소 (10) 16.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12)
환경 (7목표, 61세부목표)	자연/자원 환경	7. 에너지 (5) 13. 기후변화대응: UNFCCC (5) 14. 해양자원 (10) 15. 육상생태계 (12)
	사회 환경	6. 물과 위생 (8) 11. 도시 (10)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11)
경제성장 (2목표, 20세부목표)		8. 경제성장과 일자리 (12) 9. 인프라와 산업화 (8)
글로벌파트너십 (1목표, 19세부목표)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19)

* ()는 세부목표의 수

출처: 저자 작성

교육 분야는 MDGs의 보편적인 초등교육 목표에서 평생학습제공과 ‘교육의 질’을 핵심으로,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생애 주기에 맞춘 교육제공과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이 세부목표로 기술되고 있다. **목표 5**에 포함되어 있는 ‘성적 재생산 건강과 권리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은 여성부문 MG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러나 SRHR 문안은 협상 결렬까지 논의될 정도로 무슬림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극심한 반대론이 지금도 존재하며,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행유보를 명기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engupta 외, 2014). 결국 세부목표 5.6은 원론적인 수준의 문안으로 ‘융합’되었으나, 이 직후 SRHR과 관련한 3대 세부목표 (건강/여성의 권리/성교육)를 각각 **목표 3**, **목표 5**, **목표 4**에서 세부목표로 다루어 SRHR을 모든 SDGs에 원칙으로 흐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

명서를 남아공 대표 주도로 58개국이 서명하여 발표하기도 하여⁷⁾ 향후 정부 간 협상에서도 주요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회발전 관련 목표 중 **목표 10** (불평등)과 **목표 16** (평화)는 Post-2015 논의 초부터 ‘개발의 다면적 속성’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MDGs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Vandemoortele & Delamonica 2010). SDGs는 불평등을 국내적 불평등과 국가 간 불평등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국내적 불평등은 하위 40%인구의 소득증대 폭을 확대하고,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는 차별적 제도와 법률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 간 불평등의 경감을 위해 국제 경제기구 등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언권 보장 등을 세부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목표 16은 이미 OWG 안에서도 합의가 어려워서 공동의장이 초안을 확정했을 때까지도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IIDS 2014a). 핵심쟁점은 세부목표 16.3의 ‘법치 (Rule of Law)’ 개념이 가지고 있는 개별 국가들의 정치적 권위와 관련된 내용이며, 브라질을 위시한 많은 개발도상국 대표들은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에 반대의견을 피력했으며, 오스트리아를 위시한 “법치 지지그룹”은 글로벌 차원에서의 법치를 강조했다. OWP 논의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으며, 향후 협상과정에서 문안 변경 등을 둘러싸고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분쟁 및 분쟁원인의 예방과 종식을 통한 평화, 평화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법권 등 HLP (2013)에서 제시한 목표와는 달리 분쟁의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지난 MDGs에서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다뤄졌던 환경관련 이슈들이 SDGs의 핵심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총 7개 목표 61개의 세부목표로 확장된 환경지속성 관련 목표들은 크게는 자연/자원과 관련된 환경지속성과 도시화와 식수위생,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포함하는 사회환경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환경 부문에 있어 협상에 있어 우선 **목표 13**의 기후변화 목표가 독립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다 (Sengupta 외, 2014).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현재 UN 기후변화협약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UNFCCC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목표설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국제 조약으로서 UNFCCC의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명기할 것인가에 대해 극단적인 의견이 상충했다 (Sengupta 외, 2014). 이와 관련하여 서문에 UNFCCC와 차별적 공동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7) 중진개발도상국과 거의 모든 OECD DAC 국가 서명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를 제외).

Responsibilities, CBDR)의 원칙을 명기하자는 개발도상국 대표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졌으나, CBDR 원칙을 단순히 기후관련 목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SDGs 지도원칙으로 삼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문에는 기존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문안 수준에서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는 제20회 당사국회의 (The 20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이하 COP20) 이후 본격화될 UNFCCC 협상의 중간 결과에 따라 독립목표로서 **목표 13**의 존재 또는 역할이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도 독립적인 목표로 설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개발도상국 (G-77,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Agenda 21과 리우선언에 명시한 바와 같이 '선진국 주도' 원칙의 확인과 '국별 정책과 우선순위에 따른' 문안의 삽입을 주장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IIDS 2014a).

MDGs의 내용에 대한 가장 큰 비판 중 하나는 지나치게 사회발전에 몰입한 나머지 경제성장과 발전과의 상관관계를 간과했다는 점이다 (Meladmed, Higgins & Sumner, 2010). SDGs의 경제성장 관련 **목표 8**과 **목표 9**는 포용적 고용창출과 산업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일자리에 대해서는 노동권, 차별없는 노동, 아동노동 금지 등 인권중심 접근을 시도하였고, 산업화와 인프라에 대해 R&D와 혁신을 강조하였다.

목표 17의 이행수단과 글로벌파트너십은 재정수단, 역량배양, 무역, 시스템이슈 등 4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이 중 시스템 이슈는 다시 정책과 제도의 연속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 데이터/모니터링 및 책무성으로 나누어져 19개의 세부목표로 이루어져 있어 단일 목표 중 가장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표 17**의 핵심쟁점은 개발재원에 관한 부분이다. G77과 중국을 위시한 개발도상국들은 이행수단에서 민간참여를 강조하는 것이 자칫 기존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약속한 ODA/GNI 0.7%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G77 & China 2014).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목표 17**의 세부목표는 추가적인 개발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선진국의 공여목표도 명시하고 있다. SDGs 역시 데이터와 모니터링, 통계역량 강화에 관한 세부목표도 포함하고 있어, 데이터 혁명 논의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3) SDGs의 특징과 한계

SDGs 초안의 내용에서 보이는 특징은 우선 SDGs 초안은 Rio+20에서 합의된 사회-경제-환경 간 균형있는 발전을 지향하는 확장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반영했고, SDGs 수립 과정에서 보듯이 MG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사회와 학계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하려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발전과제로서의 기본적인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MDGs를 위시한 기존의 개발목표와는 달리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전 지구적으로 달성해야 할 보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문안 전체를 통해 100회 이상 사용된 ‘모든 곳’, ‘모두를 위한’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평등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표 5참조).

MDGs가 영유아 사망률, 질병 감소 등 1990년대 후반 당시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이슈들에 집중했다면, SDGs는 국내외의 불평등, 평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등의 영역으로 발전목표를 확대하면서 21세기의 변화된 환경과 사회적 욕구를 반영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표 5] 전문을 포함한 주요 단어 사용빈도

단 어	사용횟수	단 어	사용횟수
sustain* [지속가능]	109	2020	25
all/everywhere [모든]	103	inclu* [포용]	22
development [개발/발전]	98	quality [질]	22
2030	53	soci* [사회]	21
developing countries [개도국]	43	(in)equal [(불)평등]	21
access* [접근]	42	system [시스템/체계]	19
implement* [이행]	39	environment* [환경]	19
international [국제]	35	climate [기후]	19
women/girls [여성/여아]	31	health [건강/보건]	17
national [국내/국가]	30	right [권리]	15
produc* [생산]	29	education [교육]	15
econo* [경제]	29	child [아동]	15
techno* [기술]	28	information/data [정보/데이터]	14
LDCs [최빈국]	28	poverty [빈곤]	12
capa* [역량]	26	resilien* [회복력]	12
polic* [정책]	24	strateg* [전략]	10

8) 분석에 사용된 4개의 제안서는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A Renewed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A New Global Partnership", "The Future We Want"임 (Heeks 2014:9).

* 명사, 동사, 형용사 등 관련 단어 일체 포함.

출처: 저자 작성

목표 영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지속가능성’과 ‘개발(발전)’이외에도 ‘포용’과 ‘(불)평등’을 강조하고 ‘권리’와 ‘접근성’을 보장하려 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앞서 발표된 4개의 Post-2015 개발의제 제안서⁸⁾의 단어 사용 빈도를 분석한 Heeks (2014:10)의 결과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을 중심으로 ‘국내외적’, ‘포용’, ‘정책’과 ‘기술’ 등에 대한 강조는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SDGs 초안에서는 ‘접근성’, ‘생산’, ‘질’과 ‘회복력’이 중심 단어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발전의 기본요건으로 포용적이고 평등한 접근, 발전의 질적인 측면 강조, 생산 자원과 혁신을 통한 발전 등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SDGs의 의미있는 결과물에도 불구하고 최종합의 된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여 이를 실제로 국제사회 모두의 발전목표로서 활용하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Norton & Stuart 2014). 내용의 방대함은 일면 의견대립이 컸던 이슈들에 대해 합의보다는 일단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론적인 문안을 반복 기술하면서 봉합 상태로 마무리가 된 것에 기인하기도 한다. 특히 세부목표 중 총 15개의 국제협약과 회의, 조약이 인용되고, 기 합의된 내용을 상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SDGs가 새롭고 강력한 목표로서 MDGs와 같이 작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내용면으로는 17대 SDGs 중 11개가 사회적 포용 관련 세부목표로 두고 있어 국제사회가 포용적 성장이라는 화두에 대해 강력하게 응답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세부목표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기회와 정치적 참여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최빈국이나 사회 최약자 집단의 기회확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아, 그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Gupta 외 (2014)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불평등의 이슈를 관계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불분명하게 기술함으로써, 상대적 관계에서 오는 불평등과 불균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현재 빈곤층, 여성 등의 상황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불평등과 포용을 중심가치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책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문에 초점을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SDGs는 장기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완화 (mitigation) 목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적응 (adaptation)과 회복력 (resilience)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활동 중 완화 활동은 기후변화 원인물질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여 미래의 기후변화를 감소시키는 활동을, 적응은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역량을 기르고, 상황을 개선시키거나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활

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단기적인 위험에 초점을 맞춘 목표는 환경위험의 가속화만 막는 임시방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초안 이후 일정과 전망

SDGs 초안 발표 이전까지 Muiderman (2013)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이 SDGs가 MDGs를 대체하거나 그와 유사한 지위를 얻기는 어려우며, Post-MDGs와 통합된다고 보다는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 중 하나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Pollard and Fischler 2012 등), UN 내에서 통합의 노력은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우선, SDGs 제출 직후 UN총회는 결의안 초안 (Draft Resolution)을 통해 SDGs 제안서의 내용이 SDGs와 Post-2015 개발의제를 통합시키는 기초 (basis for integrating)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으며 (UNGA 2014b), 2014. 10. 27 UN 총회 의장은 Post-2015 개발의제 정부 간 협상을 위한 공동 Facilitator⁹⁾ 중 하나로 SDGs 공개작업반 공동의장으로서 의제개발과 협상을 주도했던 Macharia Kamau 케냐 대사를 임명하는 등 두 개의 큰 흐름을 통합하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어 지난 2014년 11월 4일과 10일 Post-2015 개발의제 도입을 위한 비공개 회의가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IISD 2014c). 11월 17일 3번째 비공식 회의를 통해 『Food for Thought Paper』를 발표하고 향후 Post-2015 개발의제 협상의 주제와 일정을 확정하였다 (표 6 참조). 이는 11월 4일 첫 회의에서 아프리카 그룹이 제안했던 적어도 1개월에 1번 이상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한 주장과 EU와 프랑스 등이 제3차 UN 개발재원국제회의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이하 FfD)와 HLPF 등과의 일정을 조정하여 논의를 지속해가자는 주장을 반영할 결과로 보여진다.

9) 나머지 1명은 David Donoghue
(주 UN 아일랜드 대사)

[표 6] 향후 논의 일정

Post-2015 비공식회의	Financing for Development	High-level Political Forum
2014. 11. 4		
2014. 11. 10	비공식회의의 일정 2014. 11. 10-13	
2014. 11. 17		
2014. 12. 3		
2014. 12. 16		
2015. 1. 19-21	2015. 1. 27-29 (준비회의)	
2015. 2. 3-6		
2015. 2. 17-20		
2015. 3. 9-13		
2015. 3. 23-27		
2015. 4. 20-24	2015. 4. 13-17 (준비회의)	
2015. 5. 18-22		
2015. 6. 22-25	2015. 6. 15-19 (준비회의)	2015. 6. 26-7-8
2015. 7. 20-24	2015. 7. 13-16 (본회의)	
2015. 7. 27-31		

출처: Co-Facilitators of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s on Post-2015 Development Agenda (2014)

이미 개최된 3차례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향후 논의 일정과 범주에 대해서 크게는 3가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우선 12월로 예정되어있는 UN 사무총장의 종합보고서를 발간 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FfD와 UNFCCC 등 2015년에 있을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회의와 로드맵을 조율하자는 것, 그리고 병렬세션을 활용해서 의제를 검토하지 말고 공개적이며 통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자는 주장이었다. 또한 비록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으나, 수단 · 스리랑카 · 과테말라 · 쿠바 · 네팔 · 이란 · 파키스탄은 Post-2015 개발의제는 빈곤퇴치가 중심 목적이 되어야 하며, FfD와 기후변화도 이런 선상에서 다루어져야함을 주장하면서, 모든 초안을 처음부터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IISD 2014b).

『Food for Thought Paper』를 통해 공동의장은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향후의 논의과정은 OWG의 방식을 준용하여 투명하고 참여적이며 유연하게 운영할 것임과 Post-2015 개발의제는 SDGs를 기반으로 2030까지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을 목적으로 함을 분명히 밝혔다. 결과물은

- 선언문
-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지표
- 이행수단 (Means of Implementation, 이하 MOI)과 새로운 글로벌파트너십

○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토 프레임워크

로 구성될 것이며, 이러한 결과문서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UN 기구들을 활용하고 기술적 검토를 위해서 UN통계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Co-Facilitators 2014).

위 문서 역시 12월 3일 이후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적어도 Post-2015 개발의제는 MDGs 형식과 유사하게 목표 (Goals)-세부목표 (Targets)-측정지표 (Indicators)의 구조는 유지할 것임은 확실해 보인다. MDGs가 목표를 규정하고 달성시한과 목표치를 제시한 세부목표의 복층구조를 가지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는 이후 거의 모든 개발관련 제안에 활용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또한 목표와 세부목표가 대폭 수정된다 하더라도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장’이 2015년 이후 개발협력의 주요 키워드를 구성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좀 더 현실적으로 보자면 앞서 밝힌 통합의 노력들이 2015년 말까지 결론을 내기에는 지난한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SDGs 제안서가 통과된 직후 David Cameron 영국총리는 9월 24일 UN에서 12개 이상의 목표는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어렵고 이상적인 것은 10개 정도라고 밝히며, 17개 목표가 지나치게 많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Ford 2014). 또한 앞서 합의가 아닌 ‘불합’으로 결론지어졌던 세부목표들에 대해서도 격론이 예상되고 있어, 목표의 수와 내용 면에서 대폭 수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12월 간행을 예고하고 있는 UN 사무총장 종합보고서 (Synthesis Report)에 담길 내용이 이후 정부 간 협상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Post-2015 개발의제 비공식 회의에서도 이 보고서를 발간 이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종합보고서는 지금까지 나온 Post-2015 모든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며, 따라서 Post-2015 개발 (또는 발전) 목표와 함께, 개발재원 등 MOI, 데이터 혁명과 조세제도 개혁 및 부패추방 등을 통한 민간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재원과 MOI 역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이미 의견의 대립을 확인한 만큼, 합의에 이르기엔 많은 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은 Post-2015개발목표, 기후변화, FfD에 관한 3대 회의가 예정되어있다. 국제적으로나 이 회의들을 주도하고 있는 UN 차원에서 이들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일관성 확보의 노력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는 (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상태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이 세 협상 모두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세부적인 논의로 들어가면 국가 간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어갈지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2015년은 국제정치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의 시기가 될 것은 자명하다. 이에 대해 우리는 변혁의 큰 그림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도 현실적인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자 : 김 지 현

KOICA ODA 연구팀 선임 연구원(jihyunkim@koica.go.kr)
국제학(개발협력전공) 박사

참고문헌

Africa CSO Platform on Principled Partnership. (2013). ACP Analysi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Report. Nairobi: ACP. Retrieved from <http://post2015.files.wordpress.com/2013/06/from-growth-models-to-development-outcomes-acp-review-of-thedsn-report.pdf>

Ford, L. (2014, September 24). UN Begins Talks on SDGs, 'Carrying the Hopes of Millions and Millions.' *The Guardian*. Retrieved from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4/sep/24/un-begins-talks-sdgs-battle-looms-over-goals>.

Group of 77 and China, (2014, June 17). *Common Position on Means of Implementation on SDGs*, A Position Statement at the 12th Open Working Group on SDGs meeting. Retrieved from: <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4209G77%20common%20position%20MOI.pdf>

Gupta, J.; I. Baud; R. Bekkers; S. Bernstein; I. Boas; V. Cornelissen; M. Iguchi; N. Kanie; R. E. Kim; M. B. Lima; P. Obani; P. Schoof; C. Stevens; and D. van Zoomeren. (2014).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Inclusive Development*. POST2015/UNU-IAS Policy Brief #5. Tokyo: United Nations University Institute for the Advanced Study of Sustainability.

Heeks, R. (2014). *From MDGs to the Post-2015 Agenda: Analysing Changing Development Priorities*, Development Informatics Working Paper Series # 56. Manchester: Center for Development Informatics.

Co-Facilitators of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s on Post-2015 Development Agenda (2014, November 11). *Food for Thought Paper: Modalities for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s on Post-2015 Development Agenda*. New York: UN. Retrieved from: http://www.un.org/pga/wp-content/uploads/sites/3/2014/11/141114_post-2015-agenda.pdf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4a, November 4). Discussions Begin on Modalities, *Substance of Post-2015 Negoti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and Practice News*. Retrieved from IISD web site: <http://sd.iisd.org/news/discussions-begin-on-modalities-substance-of-post-2015-negotiations/>

_____ (2014b, November 10). Governments Conclude Initial Exchange of Views on Post-2015 Negoti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and Practice News*. Retrieved from IISD web site:

<http://sd.iisd.org/news/governments-conclude-initial-exchange-of-views-on-post-2015-negotiations/>

_____ (2014c, November 17). Co-Facilitators Propose Modalities for Post-2015 Negoti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and Practice News*. Retrieved from IISD web site: <http://sd.iisd.org/news/co-facilitators-propose-modalities-for-post-2015-negotiations/>

The Leadership Council of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013, May 3). *An Action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Report for the UN Secretary-General*. New York: UNSDSN. Retrieved from <http://unsdsn.org/wp-content/uploads/2013/06/140505-An-Action-Agenda-for-Sustainable-Development.pdf>

Melamed, C., K. Higgins and A. Sumner (2010). *Economic Growth and the MDGs*. ODI Briefing Paper 60. London: ODI.

Norton, A. and E. Stuart. (2014, November 21).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169 Targets? Here's a suggestion for the Secretary-General. Retrieved from Post-2015.Org-What Comes After MDGs Website: <http://post2015.org/2014/11/21/17-sustainable-development-goals-and-169-targets-heres-a-suggestion-for-the-secretary-general/>.

Pollard, A. and B. Fischler (2012). Post-2015 Policy-making: What is Being Planned, What Might Actually Happen, and CAFOD's Current Policy Lines – Executive Summary, CAFOD–Just One World.

Sengupta, R.; B. Muchhala; and M. Alas. (2014, August 08). Conflict Zones in the SDG Negotiations. *Third World Network*. Retrieved from <http://www.twinside.org.sg/title2/unsd/2014/unsd140801.htm>.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Website: <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

The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s Rio+20 Conference. (2012, June 22). *The Future We Want*. Rio+20 Outcome Document. Retrieved from The

Rio+20 web site: <http://www.uncsd2012.org/content/documents/727The%20Future%20We%20Want%2019%20June%201230pm.pdf>.

United Nations System Task Team (2012).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Report to the Secretary-General*. New York: The United Nations. Retrieved from the UN web site: http://www.un.org/millenniumgoals/pdf/Post_2015_UNTTreport.pdf

United Nations (2013a).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New York: The United Nations. Retrieved from the UN web site: http://www.un.org/sg/management/pdf/HLP_P2015_Report.pdf

_____ (2013b). *A Life of Dignity for All: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Advancing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Agenda beyond 2015*. New York: The United Nations. (A/68/202). Retrieved from the web site: <http://www.un.org/millenniumgoals/pdf/A%20Life%20of%20Dignity%20for%20All.pdf>

UN Foundation. (2014) <http://www.unfoundation.org/assets/pdf/post-2015-process-slide-1114.pdf>

UN General Assembly. (2014a, August 12). *Report of the Open Working Group of the General Assembly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New York: The United Nations. (A/68/970). Retrieved from the UN web site: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68/970&Lang=E.

_____. (2014b, September 9). *Report of the Open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stablished pursuant to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6/288*. New York: The United Nations. (A/68/L.61). Retrieved from the UN web site: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68/L.61&Lang=E

Vandemoortele, J. and E. Delamonica. (2010). Taking the MDGs Beyond 2015: Hasten Slowly, *IDS Bulletin* 41 (1): 60-69.

Appendix 지속가능발전목표¹⁰⁾

목표 1.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 1.1 2030년까지 전 인류의 절대빈곤 퇴치 (현재 하루 \$1.25 이하 인구 기준)
- 1.2 2030년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가별 빈곤정의에 따라 모든 면에서의 빈곤인구 50% 감축
- 1.3 최저생계유지 등을 포함한 각국별로 적절한 사회보장시스템과 정책을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혜택 제공
- 1.4 2030년까지 모든 남녀,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 및 기초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권리, 토지 및 유산, 자연자원, 적정 신기술,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 등 기타 형태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권 보장
- 1.5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회복력 구축 및 기후관련 재해와 기타 경제·사회·환경적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 경감
- 1.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이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충분하고 예측 가능한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협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자원의 활용 보장
- 1.b 빈곤퇴치활동에 투자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 친빈곤적이며, 성차를 고려한 개발 전략을 기초로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차원의 건전한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목표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의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강화

- 2.1 2030년까지 기아종식, 빈곤층과 취약계층,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연중 안전하고, 고영양, 충분한 식량 공급 보장
- 2.2 아동의 발달저해와 신체쇠약을 방지하도록 202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부 목표 달성을 포함한,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종식과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부, 노인의 영양적 필요 고려
-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비농업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정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여성, 원주민, 가족농, 목축민, 어부 등의 농업생산량과 소규모 식량생산자의 소득 2배 증대
- 2.4 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를 도우며 기후변화, 극심한

10) 본 초안의 주석은 a) 국제협약이나 회의 등 공식명칭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b) 번역에 있어 원문을 표기함이 의미를 더 분명히 전달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 c) 국문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 원문을 표기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삽입되었음을 밝힘.

기상변화와 홍수, 가뭄 등 기타 재해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식량생산 시스템 보장과 회복력있는 농업활동 이행

2.5 2020년까지 국가·지역·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양화된 식물 및 종자은행을 통한 씨앗, 농작물, 가축 및 이와 관련 있는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와 유전적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 지식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에 대한 공정한 분배 및 접근성 보장

2.a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농촌 인프라, 농업연구, 농업조사기관, 기술개발, 개발도상국 농업생산 능력강화를 위한 식물 및 가축 유전자은행 설립 등에 대한 투자확대

2.b 도하 개발회의¹¹⁾의 의무조항 이행을 위한 모든 종류의 농업수출보조와 수출요건의 철폐를 포함한 세계 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의 시정 및 예방

2.c 식료품 시장 및 파생시장 기능 보장 및 급격한 식품가격변동을 제한하기 위한 식량저장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위한 기준 마련

목표 3. 건강한 삶의 보장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웰빙 증진

3.1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산모사망률을 0.07%이하로 경감

3.2 2030년까지 5세 이하 영유아의 예방 가능한 사망 종식

3.3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열대성 질환의 종식과 간염, 수계감염 질병, 기타 전염병 근절

3.4 2030년까지 전염병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산사망률을 예방과 치료를 통해 1/3로 경감하고, 정신건강과 웰빙 증진

3.5 마약류 약물 남용과 알콜섭취를 포함한 약물남용의 예방과 치료 강화

3.6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도로 교통사고 사상자 50% 경감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와 교육, 국가 전략과 프로그램에 재생산 보건 연계 등을 포함한 성건강 및 재생산 보건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보장

3.8 재정적 위험보호, 양질의 기초 보건 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하고 양질의 기초 의약품 및 백신 공급 등을 포함한 평등한 보건 혜택 제공

3.9 유독화학물질과 공기, 토양, 수질 오염 및 환경오염으로부터 야기되는 질병과 사망의 실질적인 경감

3.a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 강화

11) Doha Development Round

- 3.b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치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의약품과 백신 관련 R&D지원,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유동성에 관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¹²⁾』에서 보장한 개발도상국의 권리를 확인한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¹³⁾』에 따른 저렴한 기초의약품과 백신의 제공
- 3.c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과 SIDs에서 보건재원, 보건인력의 육성/훈련/채용의 실질적 확대
- 3.d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국내 및 국제적 건강위험의 조기 경보, 위험 경감과 관리를 위한 역량강화

목표 4. 포용적이고 공정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든 사람에게 평생교육 기회 증진

- 4.1 2030년까지 모든 남아·여아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교육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유롭고 공평한 양질의 초등 및 중등교육 제공
- 4.2 2030년까지 모든 남아·여아의 초등교육 준비를 위한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돌봄,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성 보장
- 4.3 2030년까지 모든 남녀의 저렴하고 질 좋은 기술교육, 직업교육, 대학과정을 포함한 제3차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 보장
-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 x% 증대
- 4.5 2030년까지 교육면에서 성차 해소 및 장애인, 원주민 및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성의 전면적 보장
- 4.6 2030년까지 남녀 불문 모든 청소년과 성인 중 x%의 문자해독능력 및 기초산술능력 확보
-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 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인권·성평등·평화와 비폭력 문화의 증진·세계시민의식·문화적 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보장
- 4.a 아동·장애인·성차를 배려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교육시설 구축 및 업그레이드
- 4.b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에, 특히 최빈국·SIDs·아프리카국에 제공되는 직업훈련·ICT·과학기술 공학 프로그램 등 선진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의 고등교육 장학금의 수를 x%까지 확대

12) Agreements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TRIPS)

13) 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4.c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최빈국 및 SIDs에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양성된 교사를 포함하여 자격을 갖춘 교사 x%까지 증대

목표 5. 양성평등 달성과 여성 및 여아의 역량강화

- 5.1 모든 국가의 모든 여성 및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 5.2 인신매매·성적 착취를 포함한 공공장소나 개인적 영역에서의 모든 여성 및 여아에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 제거
- 5.3 아동결혼, 조혼, 강제혼인, 여성성기절제등과 같은 모든 위해한 활동 근절
- 5.4 국가별로 적절한 공공서비스, 인프라 및 사회보장정책의 제공과 가족과 가정 내 책임공유의식 함양을 통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및 가치인정
- 5.5 정치, 경제 및 공적인 생활에서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시 여성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공평한 기회 보장
- 5.6 『세계인구개발회의 프로그램¹⁴⁾』, 『베이징 행동강령¹⁵⁾』과 이후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합의된 바와 같이 성건강 및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 적용
- 5.a 국내법에 근거하여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재산, 금융서비스, 상속 및 자연자원에 대한 소유 및 통제권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여성의 평등권을 제공하기 위한 개혁단행
- 5.b 여성의 역량강화를 촉진하는 실용기술의 사용, 특히 ICT 사용 진작
- 5.c 모든 차원에서 성평등을 촉진하고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를 위한 건전한 정책과 법제의 도입과 강화

목표 6. 모든 사람들의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관리 능력 확보

- 6.1 2030년까지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접근성 확보
- 6.2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여아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가능한 적절한 위생시설과 위생상태 달성, 노상배변 활동 근절
- 6.3 2030년까지 오염감소, 쓰레기 무단폐기,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물질의 방류 최소화, 미처리 하수 비율 50% 감축,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과 안전한 재사용 x% 증대를 통한 수질개선

14) 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15) Beijing Platform for Action

6.4 2030년까지 모든 영역에서 용수효율의 실질적인 증대와 물 부족과 물 부족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의 수를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담수에 대한 지속가능한 채취와 공급 보장

6.5 2030년까지 초국적인 협력 등 적절한 방식을 통한 통합적인 수자원관리 도입

6.6 2020년까지 산, 삼림, 늪지, 강, 지하수층, 호수 등 물과 관련한 생태계 보호 및 회복

6.a 2030년까지 수경재배, 담수화, 용수효율, 폐수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 등 물과 위생시설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 등에서 개도국에 대한 국제협력과 역량배양 지원 확대

6.b 물과 위생시설 관리 개선활동에 지역사회 참여 지원과 강화

목표 7. 저렴하고 믿을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식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7.1 2030년까지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현대식 에너지 서비스 전면 제공 보장

7.2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구성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실질적인 증대

7.3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효율 개선 비율의 2배 확대

7.a 2030년까지, 선진적이고 보다 깨끗한 화석연료 기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협력 증대와 에너지 인프라 및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7.b 2030년까지 모든 개발도상국에 특히, 최빈국과 SIDs에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와 기술 업그레이드

목표 8. 모두를 위한 일관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

8.1 각국 환경에 맞추어 특히, 최빈국은 연간 GDP 성장률이 적어도 7%이상 되도록 1인당 경제성장 지속

8.2 고부가가치와 노동집약적 섹터 집중 등 다각화, 기술 업그레이드, 혁신을 통해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 달성

8.3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창출, 창업, 창의성과 혁신 등을 지원하고, 금융서비스 제공 등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 및 중소기업의 법인화와 성장을 독려하는 개발중심

정책 추진

- 8.4 선진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년 계획¹⁶⁾』에 따라 2030년까지 소비와 생산에서의 전 세계 자원 효율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의 질적 저하와 경제성장을 분리하기 위해 노력
- 8.5 2030년까지 생산적인 완전 고용, 청소년·장애인을 포함한 남녀 모두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달성
- 8.6 2020년까지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실업상태인 청년의 비중을 실질적으로 경감
- 8.7 최악의 아동노동 제거 및 금지, 강제노동 퇴치, 2025년까지 소년병의 모집 및 활용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행
- 8.8 노동권 보호와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이주노동자와 불안정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증진
-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와 상품을 알리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장려하는 정책을 강구하고 이행
- 8.10 모든 사람이 은행, 보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금융기관 역량강화
- 8.a 『최빈국에 대한 무역관련 기술지원을 위한 개선된 통합체계¹⁷⁾』 등을 통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무역관련 원조 지원 증대¹⁸⁾
- 8.b 2020년까지 청년고용을 위한 글로벌 전략의 개발과 운영, 『ILO 세계고용협약¹⁹⁾』 이행

목표 9. 회복력 높은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혁신 육성

- 9.1 저렴하고 공평한 접근성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발전과 인류의 웰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및 접경 인프라를 포함하는 양질의, 믿을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있는 인프라 개발
- 9.2 국내적 상황에 맞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과 2030년까지 고용과 GDP에서의 산업분야 비중의 대폭 증대, 특히 최빈국에서 2배 증대
- 9.3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소규모 산업 및 기타 기업의 신용우대를 포함한 금융서비스 접근성 및 가치사슬과 시장 편입 증대
- 9.4 2030년까지 모든 국가들이 개별적 역량에 맞춰 자원 활용 효율성 증대와 청정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과 산업 프로세스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한 인프라 업

16) 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10-YFP)

17) 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EIF)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18) Aid for Trade

19) Global Jobs Pact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그레이트와 산업 변화 정책이행

- 9.5 2030년까지 혁신을 장려하고 인구 백만 명 당 R&D 연구 인력을 x% 증원 및, 민간 및 공공 R&D 지출을 증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과학기술 연구 강화 및 산업부문 기술역량 업그레이드
- 9.a 아프리카 국가, 최빈국, 내륙국 및 SIDs에 대한 금융, 기술, 및 기술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인프라 발전 실현
- 9.b 산업 다각화와 상품 부가가치 등에 초점을 둔 정책적 환경보장 등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내 국내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 지원
- 9.c 2020년까지 최빈국에서 ICT 접근성 대폭 증대와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인터넷의 전면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

목표 10. 국내적 및 국가 간 불평등 경감

- 10.1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하위 40% 인구의 소득 증대를 국내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달성하고 이를 유지
- 10.2 2030년까지 나이·성별·장애·인종·민족·출신지·종교·경제 및 기타 상태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을 촉진하고 역량을 강화
- 10.3 차별적 법률·정책·관례의 철폐 및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정책·활동 수립을 통한 기회의 평등 보장 및 결과의 불평등 경감
- 10.4 재정·임금·사회보호 정책 등 정책의 도입과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높은 평등 수준 달성
- 10.5 전 세계 금융시장과 기구들의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이러한 규제의 이행을 강화
- 10.6 국제경제 및 금융기구 내에서 효과를 증대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정당성이 확보된 제도를 도출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발언권 강화 보장
- 10.7 잘 계획되고 관리되는 이민정책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하고, 정기적이며, 책임성 있는 이주 및 인구의 이동을 실현
- 10.a WTO협약에 근거하여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특혜대우 원칙의 이행
- 10.b 재정지원이 가장 필요한 국가 특히, 최빈국, 아프리카 국가, SIDs, 내륙국의 국가 계획과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ODA 및 FDI를 포함한 재정지원 권장

10.c 2030년까지 이주노동자의 송금 수수료 3% 이내로 경감 및 5% 이상의 송금 코리 더 철폐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11.1 2030년까지 충분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주거공간과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보장 및 빈민촌 업그레이드

11.2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어린이, 장애인, 노인인구의 요구에 초점을 둔 대중교통의 확대와 도로 안전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저렴하며 누구나 사용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 제공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적이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주 계획 수립 및 관리 증진

11.4 세계의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려는 노력 강화

11.5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중점을 두고 2030년까지 물 관련 재해를 포함한 재해에 의해 야기된 사상자와 직·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은 인구를 대폭 경감하고, GDP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손실을 x%까지 경감

11.6 2030년까지 공기의 질과 지자체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인구 1인당 도시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적 악영향을 경감

11.7 2030년까지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누구나 접근 가능한 녹색 공유 공간의 여성과 아동 및 노인과 장애인에 주안점을 둔 전면적인 제공

11.a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의 개발계획을 강화함으로써 도시-근교도시-지방 간 경제·사회·환경측면에서의 긍정적 영향을 지원

11.b 2020년까지 포용성,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적응과 감축, 재해 회복력, 향후 수립될 『효고 프레임워크²⁰⁾』에 따라 모든 차원에서의 재해위험관리 등을 지향하는 통합적인 정책과 계획을 도입 및 이행하는 도시와 거주지 수의 x% 증대

11.c 현지 물품을 활용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건축을 위해 최빈국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12.1 선진국 주도 하에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역량을 고려하여 모든 국가가 10-YFP의 이행

20) Hyogo Framework

- 12.2 2030년까지 자원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지속가능한 관리 달성
- 12.3 2030년까지 소매와 개인 소비차원에서 전 세계 음식물쓰레기 반감과 추수 후 손실을 포함하여 생산과 공급체인에서 발생하는 식품손실 경감
- 12.4 2020년까지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협약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물질의 분해주기에 따른 환경적으로 건전한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달성과 이들의 공기·물·토양 배출 대폭 경감
-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재사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의 실질적인 경감
- 12.6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 등 기업이 지속가능한 실천계획을 도입하고 지속가능성 정보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독려
- 12.7 국가의 정책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 조달 시행 증진
- 12.8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에 대한 관련 정보와 인식을 갖도록 보장
- 12.a 지속가능한 형태의 소비와 생산 증진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
- 12.b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지 문화와 상품을 알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지속가능발전 영향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과 이행
- 12.c 국내 환경에 따라 조세제도 개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개발도상국의 현황과 니즈를 고려, 빈곤층과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시장왜곡 기제 제거를 통해 소모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

* UNFCCC²¹⁾가 기후변화 협상에 있어 최상위·최우선의 국제·정부 간 회의임을 인정함.

- 13.1 기후관련 위험요인과 자원재해에 대한 모든 국가의 회복력 및 적응 역량 강화
- 13.2 국가정책, 전략, 계획에 기후변화 조치 통합
- 13.3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영향감축, 조기경보 등에 대한 교육, 인식제고, 개인 및 제도적 역량 개선
- 13.a 선진국은 효과적인 완화활동 및 이행과정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니즈를 투명하게

21)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반영하고, 기금확보를 통한 『녹색기후기금²²⁾』의 전면적인 운영을 위해 UNFCCC에서 2020년까지 모든 재원을 활용한 연간 1,000억불 동원 목표 약정의 이행

13.b 최빈국에서 여성, 청소년, 지방 및 소외된 지역사회에 초점을 둔 효과적인 기후 변화관련 계획 및 관리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촉진

목표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사용

14.1 2025년까지 해양폐기물 및 영양분오염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특히, 육상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오염 예방 및 대폭 감감

14.2 2020년까지 회복력 강화를 통해 심각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 및 해안생태계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보호 및 건강하고 생산적인 바다를 만들기 위한 복구조치

14.3 모든 차원에서의 과학협력 증진 등을 통해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

14.4 2020년까지 효과적인 조업 규제 및 남획, 불법·무허가·규정 외 조업²³⁾, 파괴적 어업관행 근절, 적어도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최대한 지속가능한 수확량을 유지하는 수준까지 최단시간 내 어류자원 복원을 위한 과학적인 관리계획 시행

14.5 2020년까지 국내법 및 국제법과 과학적 정보를 기초로 적어도 10%의 연안과 해양지역 환경 보존

14.6 2020년까지 과잉생산능력과 남획을 조장하는 어업 보조금 금지, 불법조업을 야기하는 보조금 폐지, 적절하고 효과적인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대한 특별대우가 WTO 어업보조금 협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인지하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보조금 제한

*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협상, 도하 개발 아젠다, 홍콩 장관급 협상²⁴⁾을 고려함.

14.7 2030년까지 어업·농업·관광산업의 지속가능경영 등을 통해 해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함으로써 SIDs과 최빈국의 경제적 혜택 증대

14.a 해양 건전성을 높이고, 해양 생물다양성의 개발도상국 특히, SIDs과 최빈국 발전 기여도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지식 배양, 연구능력 개발 및 『정부간해양학위원회 해양기술 이전에 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²⁵⁾』을 고려한 해양기술이전

14.b 소규모 영세어업 종사자들에 해양자원 및 시장 접근 확보·제공

14.c 『UN 해양법협약²⁶⁾』에 투영되어 있는 해양과 그 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정한 체계를 포함한 국제법의 전면적인 이행

22) Green Climate Fund

23)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eries (불법조업)

24) Hong Kong Ministerial Mandate

25)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Criteria and Guidelines on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26)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목표 15. 육상 생태계에 대한 보호, 회복 및 지속가능한 사용, 삼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단 및 복원,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 15.1 2020년까지 국제협약 의무사항 이행의 연장선상에서 육상 및 담수 생태계와 서식지 특히, 삼림, 늪지, 산, 건조지의 보호, 복구, 지속가능한 사용 보장
- 15.2 2020년까지 모든 종류의 삼림에 대한 지속가능 관리 이행 촉진, 산림벌채 방지, 퇴화 산림 복구, 전 세계적으로 x%까지 조림과 재식림 확대
- 15.3 2020년까지 사막화 방지, 사막화·가뭄·홍수의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한 노후 토양 및 토지 복구, 토지황폐화 없는²⁷⁾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
- 15.4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등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인 생태계로부터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개선을 위한 산악 생태계 보존 보장
- 15.5 자연서식지 황폐화 경감,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및 2020년까지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긴급조치
- 15.6 유전자원의 활용으로 인해 창출되는 혜택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 보장과 그 자원에 대한 접근기회 증진
- 15.7 동식물상 보호종의 밀렵과 밀거래 종식과 불법 야생동물상품의 수요와 공급 문제를 상기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
- 15.8 2020년까지 육지와 수경 생태계에 급속히 확산되는 외래종의 유입을 방지하고 그 영향을 대폭 경감할 수 있는 조치 도입 및 우선 확산 종에 대한 통제 및 근절²⁸⁾
- 15.9 2020년까지 국가 또는 지역사회 개발, 빈곤감소 전략과 그 해석에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가치를 통합
- 15.a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자원확보와 증대
- 15.b 지속가능한 삼림관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에 삼림보호와 재식림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관리개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자원 확보
- 15.c 지속가능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 증대 등 보호종의 밀렵과 밀거래를 근절하려는 노력에 대한 전 세계의 지지 보장

27) land-degradation-neutral

28) <http://www.cbd.int/doc/strategic-plan/targets/T9-quick-guide-en.pdf> 참조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 16.1 전 지역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이와 관련된 사망률 대폭 경감
- 16.2 아동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 16.3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법치 촉진 및 모두에게 평등한 사법 접근성 보장
- 16.4 2030년까지 불법적인 자금 및 무기유입 대폭 감축, 도난(은닉)재산²⁹⁾의 환수 및 회복,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 근절
- 16.5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수수의 실질적인 감소
- 16.6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투명한 제도/기관 개발
- 16.7 모든 차원에서 (여론에) 반응성이 높으며 포용적이며 참여적이고 대의적인 의사 결정 보장
- 16.8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 참여 확대와 강화
- 16.9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³⁰⁾ 부여
- 16.10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정보접근성 보장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
- 16.a 국제협력 등을 통해서 폭력예방과 테러리즘과 범죄 근절과 관련된 국내 제도 강화
-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률과 정책 추진 및 법제화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재정수단

- 17.1 개발도상국의 세금과 공공 수익 징수 역량 개선을 위해 국제적 지원을 통한 국내 자원 동원(체계) 강화
- 17.2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기로 약정한 ODA/GNI 0.7%를 달성하는 등 ODA 활동을 완수해야하며, 이 중 0.15-0.2%는 최빈국에 제공
- 17.3 다양한 방식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동원
- 17.4 부채조달, 채무탕감, 부채조정 등을 위한 공조정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장기부채지속성 확보를 지원하고, 부채고통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고채무국의 외채문제 고려
- 17.5 최빈국에 투자촉진 체제 도입 및 시행

29) stolen-assets

30) legal identity

기술

- 17.6 UN차원에서 현존하고 있는 조정 메커니즘과, 합의 시 국제적 기술 증진 메커니즘을 통해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의 남-북·남-남·삼각협력, 지역 및 국제협력 강화와 상호 합의에 의한 지식공유 증진
- 17.7 상호 합의에 의한 양허 및 특혜조건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보급과 확산
- 17.8 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 과학기술 혁신 역량배양 메커니즘의 완전 가동 및 ICT 등 적정기술 사용의 향상

역량배양

- 17.9 개발도상국이 남-북, 남-남, 삼각 협력 등을 통해 모든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국가계획 지원을 목표로 하는 역량배양 실행에 대한 국제적 지원 향상

무역

- 17.10 『도하 개발 아젠다³¹⁾』 협상에서 나온 결론 등을 포함하여, WTO체제 하의 범세계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공개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평등한 다자간 무역시스템 촉진
- 17.11 2020년까지 전세계 수출 중 최빈국의 비중을 2배로 증대시키는 것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폭 증대
- 17.12 WTO 결정의 연장선상에서 최빈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특혜원산지규정 적용을 투명하고 단순화하여 시장진출을 촉진하도록 돕는 것을 보장하는 등 모든 최빈국이 지속적으로 무관세 및 무할당³²⁾ 시장 진출 이행을 시의 적절하게 실현

시스템 이슈

- 정책과 제도의 연속성
- 17.13 정책조정과 정책일관성을 통한 글로벌 거시경제의 안정성 향상
-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향상
- 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개별국가의 정책과 리더십에 대한 존중
-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
- 17.16 모든 국가에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지원할 지식, 전문성, 기술, 자원 등을 공유하고 동원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으로 완성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향상

31) Doha Development Agenda

32) non-quota

17.17 경험을 바탕으로 파트너십 전략을 활용하는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시민사회 파트너십의 독려 및 증진

데이터, 모니터링 및 책무성

17.18 2020년까지 최빈국 및 SIDs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 소득·젠더·연령·인종·민족·이민 신분·장애·지리적 위치와 기타 국내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종합한 수준 높고, 시의적절하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능성을 대폭 증대하기 위한 역량 배양 지원 향상

17.19 2030년까지 GDP를 보완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여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배양을 지원

연구자료

ODA연구 2014-35-227

『개발과 이슈』는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최근 연구 및 정책을 소개하여 국내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되는 비정기간행물입니다.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출처와 집필자 명시 하에 인용이 가능합니다.

※ 본 자료는 KOICA ODA전자도서관(lib.koica.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